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	비고
4575	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경제복지위원회

의안 번호	4575
----------	------

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경 제 복 지 위 원 회

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7. 27.

경제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7월 9일,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9일, 의장으로부터 회부

다. 상정 및 심사 일자: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

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.의결 (2026.7.21.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- 주요 내용으로는 위약금 공제 조항을 삭제하고,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을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..

나. 주요내용

- 위약금 공제 조항을 삭제하고 반환기준을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으로 일원화 함(안 제9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: 류옥화)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부합하며,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기존 조례의 자체 위약금 공제 조항은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과실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소지가 있었으며, 이를 국가 표준인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맞추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,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,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독자 조항보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정위 기준을 따르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본 개정안은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라는 행정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하며,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: 생 략

5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6. 소 수 의 견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 음

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7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7. 9.

제 출 자: 서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이용료 반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위약금 공제 조항을 삭제하고 반환기준을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으로 일원화 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마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강화 등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) 입법예고 : 2026. 5. 22. ~ 6. 11. / 접수 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
전액반환
2. 제1호 외의 경우: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준용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 (이용료 반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	제9조 (이용료 반환) ----- ----- ----- ----.
1. <u>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: 전액반환</u>	1. <u>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반환</u>
2. <u>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: 전액반환</u>	2. 제1호 외의 경우: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준용
3. <u>이용 또는 수강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: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</u>	<삭 제>
4. <u>이용자가 이용 또는 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: 10퍼센트를 공제 후 이용 또는 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</u>	<삭 제>
5. <u>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준용한다.</u>	<삭 제>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□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"분쟁당사자"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, 별표 II, 별표 III, 별표 IV와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공정거래위원회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334호)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